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5 - 31호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회의 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5월 26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욕구에 부응하는 시설지원에 제도적 한계가 있고 청소년의 활동 장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청소년활동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음.

나. 따라서 청소년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활동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청소년 자신의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고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활동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다. 청소년 활동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개방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8(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회실, 전화032-440-6222, 팩스 032-440-8764, 이메일 jbkim81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잠재역량 계발 및 다양한 활동 욕구에 따른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소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교류활동, 청소년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공공시설"이란 지하철역사, 광장, 공원,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진 시설을 말한다.
5. "법인 또는 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청소년활동 진흥 시행계획 수립)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의 시행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2.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연구 및 계획 수립
3. 청소년활동시설의 현황조사 및 정보 관리
4.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 시설 간 연계 및 공동사업 지원 관리
5.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활동의 요구에 관한 조사
2.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청소년활동의 활성화
4. 청소년활동에 관한 정보제공
5.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장소 및 장비 등 제공
6. 청소년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
7. 청소년활동 축제 지원
8.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5조(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 등)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공공시설을 개방하고 여가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전용공간이나 특별체험공간 등의 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거나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구, 각 급 학교 및 민간부문과의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지하철역사 청소년 댄스 연습시설 설치 예상 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장 정규원

[별첨2]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22조(조례)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제7조(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등) 제32조(청소년이용시설) ▣ 청소년 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29조(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등) 제47조(청소년활동의 지원)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관련 법령 발췌 사항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카.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 다. 생략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차. 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

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등)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이하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청소년활동의 요구에 관한 조사
2. 지역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3.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지원
4.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홍보와 지원
5.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6. 청소년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
7. 제9조의2에 따른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에 대한 지원
8. 제9조의4에 따른 정보공개에 대한 지원
9. 그 밖에 청소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활동진흥원과 연계·협력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청소년이용시설) ① 제10조제2호의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은 그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그 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이용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소년 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① 이 법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소년육성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추진 방향으로 한다.

1. 청소년의 참여 보장
2.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의 능동적 삶의 실현
3. 청소년의 성장 여건과 사회 환경의 개선
4. 민주·복지·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 향상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

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제29조(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②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은 청소년단체의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할 수 있다.
- ③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시설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보조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